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386
----------	------

제출년월일 : 2013. 5. 8.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제안자의 자격범위 확대와 신속한 실무심사를 위한 위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인사상 특전, 부상금)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된 우수사례를 조례에 도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안자의 자격범위 확대 : (안 제3조 제1호)
- 민원성 제안의 처리규정 신설 : (안 제7조 제4항)
-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위원 기준 하향 조정 : (안 제10조 제2항)
-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 (안 제20조의2)
- 창안자 인사상 특전 기준 일부 변경 : (안 별표 1)
- 창안자 부상금 지급기준 일부 변경 : (안 별표 2)

개정 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국민제안규정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4조의2
- 공무원제안규정 제19조의2,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제3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붙임 4

- 입법예고 기간 : 2013. 3. 25. ~ 4. 15.(22일)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계획 (방침) : 붙임 6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안산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제1호 중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를 “안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시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로 하며,

제6호 중 “도지사” 를 “경기도지사 및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시민과 공무원은” 을 “제안자는” 으로 하고, 제2항 중 “아이디어 제안 및 실시제안” 을 “제안” 으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으로” 을 “공무원 등으로” 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사항인 경우에 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중 “흠결” 을 “흠” 으로 하고, 제2항 중 “경우” 를 “때” 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실무위원회” 를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 로 하고, 제2 항 중 “시정조정위원회” 를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운영한다.”를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계장으로 구성·운영한다.”로 하고,

제4항 중 “재적위원”을 “구성위원”으로 하고,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제5항 중 “전문위원”을 “전문가”로 하며, 제6항 중 “또는”을 “하거나”로 한다.

제11조 제명 중 “전문위원”을 “전문가 자문”으로 하고,

제1항 중 “갖춘 자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중 “전문위원은”을 “전문가는”로 한다.

제12조 중 “전문위원”을 “전문가”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접수한 날부터”를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또는”을 “이나”로 하며, “도지사”를 “경기도지사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과 부상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부상금의 최고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22조 중 “제안자” 를 “창안자” 로 한다.

제23조 중 “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25조 중 “채택된 제안” 을 “창안” 으로 한다.

제26조 중 “경우” 를 “때” 로 한다.

제27조 중 “경우” 를 “때” 로 한다.

제29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김 창 모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획계장 정 명 현
	담당자 성명·전화	임 병 혁 (행정 2802)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제19조 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금 상	특별승급	1.2점 이내	
은 상		1.0점 이내	
동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0.7점 이내	
장려상		0.3점 이내	

[비고] 인사특전 중 특별승급은 제안이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시장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 (제20조 관련)

시장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이상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안 ----- ----- ----- ----- -----.</p>
<p>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u>공무원으로</u>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 <u>공무원 등으로</u> ----- ----- ----- ----- ----- -----.</p>
<p>제7조(제안의 접수) ① ~ ③ (생략)</p>	<p>제7조(제안의 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신설)</p>	<p>④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p>
<p>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흡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8조(제안의 보완) ① ----- ----- 흡 ----- ----- ----- ----- ----- ----- -----.</p>
<p>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p>	<p>② ----- ----- 때 ----- -----.</p>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채택 여부	1. <u>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기능은 <u>시정조정위원회</u> 가 이를 대행한다.	② ----- <u>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생략)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제안업무 담당국장</u>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u>제안업무 담당과장</u> 이 되며,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 ----- - <u>제안업무 담당과장</u> 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계장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u>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 <u>구성위원</u> ----- ----- ----- <u>인정하는</u>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u>전문위원</u> 및 실시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 <u>전문가</u> -----.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⑥ ----- <u>하거나</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전문위원) ① 시장은 제안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안의 심사·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u>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p>	<p>제11조(전문가 자문) ① ----- ----- -----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p> <p>② <u>전문가는 ----- ----- ----- -----.</u></p>
<p>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u>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u> 수당·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수당 등) ----- ----- 전문가 ----- 범위에서 -----.</p>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u>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u>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 -----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견조회 등)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의견조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범위에서 -----.</p>
<p>제18조(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u>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상 이상으로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창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창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를 추천할 수 있다.</u></p>	<p>제18조(우수제안의 추천) ----- 제17조제1항에 따라 ----- -----이나 ----- ----- 경기도지사 및 ----- 안전행정부장관 -----.</p>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u>위원회가</u>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기념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신설)	제20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u> ----- ----- <u>범위에서</u> -----. ④ <u>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라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과 부상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부상금의 최고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u>
제20조의2(포상 등) (신설)	제20조의2(포상 등) <u>시장은 제안의 심사 .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u>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생략)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 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 액은 3천만원 이하의 <u>범위 안에서</u>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범위에서</u>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 은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 우의 상여금은 <u>제안자가</u>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 ----- ----- <u>창안자</u>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 ----- -----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제25조(관리 등)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5조(관리 등) ① ----- 창안----- ----- -----.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 ----- ----- 때----- -----.																																				
제27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창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 ----- ----- 때----- -----.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창안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사특전</th> <th style="text-align: center;">실적가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승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u>0.8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은 상</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u>0.6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0.4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려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0.2점 이내</u></td> <td></td> </tr> </tbody> </table>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u>0.8점 이내</u>		은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u>0.6점 이내</u>		동 상	<u>0.4점 이내</u>		장려 상	<u>0.2점 이내</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창안등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사특전</th> <th style="text-align: center;">실적가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승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u>1.2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은 상</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0.7점 이내</u></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려 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u>0.3점 이내</u></td> <td></td> </tr> </tbody> </table>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u>1.2점 이내</u>		은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u>1.0점 이내</u>		동 상	<u>0.7점 이내</u>		장려 상	<u>0.3점 이내</u>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u>0.8점 이내</u>																																			
은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u>0.6점 이내</u>																																			
동 상		<u>0.4점 이내</u>																																			
장려 상		<u>0.2점 이내</u>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u>1.2점 이내</u>																																			
은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u>1.0점 이내</u>																																			
동 상		<u>0.7점 이내</u>																																			
장려 상		<u>0.3점 이내</u>																																			
[비고] 인사특전 중 특별승급은 제안이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창안등급</th> <th colspan="2">시 상 내 역</th> </tr> <tr> <th>부 상 금</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u>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u></td> <td>90점 이상</td> </tr> <tr> <td>은 상</td> <td><u>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td> <td>85점 이상</td> </tr> <tr> <td>동 상</td> <td><u>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u></td> <td>80점 이상</td> </tr> <tr> <td>장 려 상</td> <td><u>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td> <td>70점 이상</td> </tr> </tbody> </table> <p>[비고] (생략)</p>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u>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u>	90점 이상	은 상	<u>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85점 이상	동 상	<u>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u>	80점 이상	장 려 상	<u>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	70점 이상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u>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u>	90점 이상																
은 상	<u>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85점 이상																
동 상	<u>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u>	80점 이상																
장 려 상	<u>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	70점 이상																
<p>[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창안등급</th> <th colspan="2">시 상 내 역</th> </tr> <tr> <th>부 상 금</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u>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u></td> <td>90점 이상</td> </tr> <tr> <td>은 상</td> <td><u>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td> <td>85점 이상</td> </tr> <tr> <td>동 상</td> <td><u>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td> <td>80점 이상</td> </tr> <tr> <td>장 려 상</td> <td><u>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u></td> <td>70점 이상</td> </tr> </tbody> </table> <p>[비고] (현행과 같음)</p>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u>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u>	90점 이상	은 상	<u>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85점 이상	동 상	<u>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	80점 이상	장 려 상	<u>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u>	70점 이상
창안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u>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u>	90점 이상																
은 상	<u>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u>	85점 이상																
동 상	<u>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u>	80점 이상																
장 려 상	<u>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u>	70점 이상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386
----------	------

제안년월일 : 2013. 5. 22.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자의 인사상 실적가점 및 부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자의 인사상 실적가점을 상향 조정(안 별표1)
- 제안자 범위 확대에 따라 일반시민의 제안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부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안 별표2)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제19조 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고
금상	특별승급	1.2점 이내	
은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1.0점 이내	
동상		0.8점 이내	
장려상		0.4점 이내	

[비고] 인사특전 중 특별승급은 제안이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시상내역	
	부상금	지급기준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창안등급</th> <th>인사특전</th> <th>실적기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특별승급</td> <td>08점아내</td> <td></td> </tr> <tr> <td>은 상</td> <td rowspan="3">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td> <td>06점아내</td> <td></td> </tr> <tr> <td>동 상</td> <td>04점아내</td> <td></td> </tr> <tr> <td>장려 상</td> <td>02점아내</td> <td></td> </tr> </tbody> </table>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08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06점아내		동 상	04점아내		장려 상	02점아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창안등급</th> <th>인사특전</th> <th>실적기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특별승급</td> <td>12점아내</td> <td></td> </tr> <tr> <td>은 상</td> <td rowspan="3">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td> <td>10점아내</td> <td></td> </tr> <tr> <td>동 상</td> <td>07점아내</td> <td></td> </tr> <tr> <td>장려 상</td> <td>03점아내</td> <td></td> </tr> </tbody> </table>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12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10점아내		동 상	07점아내		장려 상	03점아내		<table border="1"> <thead> <tr> <th>창안등급</th> <th>인사특전</th> <th>실적기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특별승급</td> <td>12점아내</td> <td></td> </tr> <tr> <td>은 상</td> <td rowspan="6">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td> <td>10점아내</td> <td></td> </tr> <tr> <td>동 상</td> <td>08점아내</td> <td></td> </tr> <tr> <td>장려 상</td> <td>04점아내</td> <td></td> </tr> </tbody> </table>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12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10점아내		동 상	08점아내		장려 상	04점아내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08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06점아내																																																									
동 상		04점아내																																																									
장려 상		02점아내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12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10점아내																																																									
동 상		07점아내																																																									
장려 상		03점아내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기점	비고																																																								
금 상	특별승급	12점아내																																																									
은 상	회장부서 전보기획 부여	10점아내																																																									
동 상		08점아내																																																									
장려 상		04점아내																																																									
[비고] (신 설)		[비고] 인사특전 중 특별승급은 제안이 실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개정안과 같음)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별표 2]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창 안 등 급</th> <th colspan="2">시 상 내 역</th> </tr> <tr> <th>부 상 금</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td> <td>90점 이상</td> </tr> <tr> <td>은 상</td> <td>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 <td>85점 이상</td> </tr> <tr> <td>동 상</td> <td>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d> <td>80점 이상</td> </tr> <tr> <td>장려상</td> <td>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td> <td>70점 이상</td> </tr> </tbody> </table>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창 안 등 급</th> <th colspan="2">시 상 내 역</th> </tr> <tr> <th>부 상 금</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td> <td>90점 이상</td> </tr> <tr> <td>은 상</td> <td>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 <td>85점 이상</td> </tr> <tr> <td>동 상</td> <td>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td> <td>80점 이상</td> </tr> <tr> <td>장려상</td> <td>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td> <td>70점 이상</td> </tr> </tbody> </table>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창 안 등 급</th> <th colspan="2">시 상 내 역</th> </tr> <tr> <th>부 상 금</th> <th>지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금 상</td> <td>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td> <td>90점 이상</td> </tr> <tr> <td>은 상</td> <td>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 <td>85점 이상</td> </tr> <tr> <td>동 상</td> <td>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 <td>80점 이상</td> </tr> <tr> <td>장려상</td> <td>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td> <td>70점 이상</td> </tr> </tbody> </table>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이상																																																									
창 안 등 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급기준																																																									
금 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비고] (생 력)		[비고]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